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1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09호(2015. 12. 2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번지 일대, 1,534.9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(주)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이사 홍상혁
 - 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 603-1(장안동, 경남빌딩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10. 17.(예정)
6. 변경 사유
 - 구역면적 변경 :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 외 건축물 점유 국유지 제척
 - 주용도 변경 : 관광숙박시설 → 생활숙박시설
7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4)에 비치